

④ 정보공개제도

I.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다.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라.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마.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 사전 차단 가능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4)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2001. 11)
- 국무총리훈령 제정(2003. 6. 24)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1. 29)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6. 10. 4)
-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의무화

4.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가. 정보의 개념

-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대상이 아님. 다만,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보공개여부 결정시점에 당해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면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관련판례

- 전산기지에서 별도의 산출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서울행법 2006.9.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 정보가 원본이 아닌 경우는?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

▪ ‘월별신용카드내역서’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2005구합9126 / 2006년 연차보고서)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사 발행) 역시 신용카드사가 피고들에게 매월 발행 하는 월별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월별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신용카드사가 매달 이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발송하는 사실, 피고 측의 1개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함.

▪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는 정보에 해당하는가?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프로그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함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나. 공개의 개념

- 1)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2호)
- 2)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아래와 같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1)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을 포함한 개인 및 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중중, 동창회 등)
- 2)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

라.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구 분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06년 지정기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지방공사 강남병원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과학재단 등('06년 지정기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7.4)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으나, 기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은 시행령 제2조 제4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포함되어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

II.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활성화

1. 사전정보공표

가. 개념

-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나. 공표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다. 정보 선정시 유의사항

- 청구빈도수가 높은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공표 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경미한 사항은 제외
- 너무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라. 공표의 주기·시기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마. 공표내용

- 업무추진비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소속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 사전공표정보 : 공표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체화
- ※ 사업평가 결과 → 사업타당성 평가, 환경영향 평가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추진단계별 공개 → 계획 확정, 계획 변경, 진행과정 및 결과 등

바. 공표방법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가 원칙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사.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2. 이용자 편의에 기반한 홈페이지 구성

가. 개념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나. 홈페이지 구성 기본 방향

-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개설 : 자료실, 질의·응답 게시판 등과 별도로 정보공개방 설치
- 편리한 접근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공개 메뉴를 배치하여 접속의 편의성 보장
- 메뉴 구성의 통일성 유지 : 기관별로 개별적인 메뉴 구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의 권고안에 따라 메뉴를 구성

상위 메뉴	하위 메뉴	내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절차, 청구 방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사전정보공표	법 §7①에 따른 사전 정보 공표 관련 사항
	정보목록	법 §8①에 따른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링크

다. 메뉴 구성 요소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청구 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불복절차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안내 및 각종 서식 등 게시
- 사전정보공표 : 대상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방법을 제시하고 공표 대상 정보의 목록 선택시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링크
- 정보목록 : 기관별로 작성한 정보목록 파일을 게시
- 정보공개청구 :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진행 상황 및 결정통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링크하는 메뉴
-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기관은 자체적인 정보공개 처리 시스템 설치

3. 정보목록의 작성·공개

가. 작성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법 제8조제1항)

나. 정보목록 구성 항목

- 단위업무 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상상의 제목
- 생산 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 여부 : 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정보목록(예시)>

생산일자	번호	단위업무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2008. 12.3.	제도총괄과 -10000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수립	제도총괄과	홍길동	10년	공개

다.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비공개대상정보도 포함하나, 목록자체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4.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법 제9조 제3항)

가. 작성 단위

- 실·과·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 직제에 명시된 실·과·팀 소관사항(단위업무)
 - ※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도 실과 단위로 세분한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나. 작성 방법

1) 실·과·팀별 비공개대상정보 작성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과·팀 소관사항(단위업무)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간략히 기재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관련법규까지 작성
예시)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여부 판단
 - ※ 각 작성단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대상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2) 기관단위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

-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는 실·과·팀에서 조사한 서식을 취합하여 세부기준 작성
 - ※ 기관별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나 TF팀 구성·운영

3)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등 자문실시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 실·과·팀에서 조사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대상정보로 할 경우에는 작성한 실·과·팀과 의견조정

4)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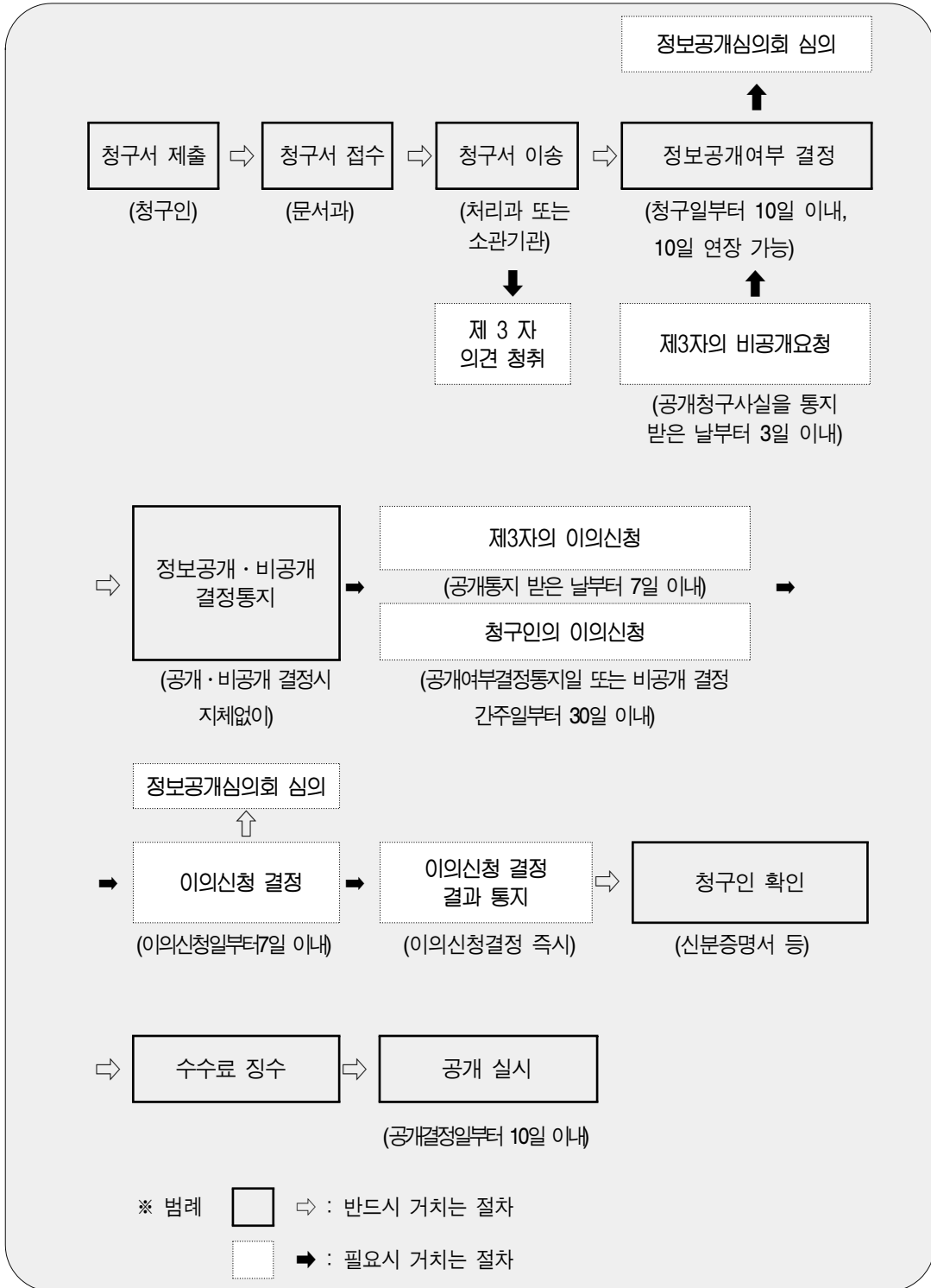
<비공개대상 정보 조사 서식(예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제도총괄과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의견조회	제5호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민원제도과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및 심사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와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다.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최신판례의 인용과 비공개 정보의 보존년한 경과 등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신속하게 재분류하여 공개
- 직제개정 등으로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내용을 보완하여 공개

Ⅲ. 정보공개업무 일반



1. 정보공개의 청구

가.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법 제10조 제1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나.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 담당 공무원은 기능별·업무별 비공개의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다.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공개할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 두 9212)

2.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이송

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을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령 제6조 제2항)

나.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 정보공개 접수창구,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그 청구 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부서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다.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라.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마.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이첩 처리

- 대 상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 결정통지서 대신 회신 문서 발송

바. 반복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 ※ 3회 이상 반복청구 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가능

3.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가. 제3자 통지(법 제11조제3항)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통지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나.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다.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라.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

4. 정보공개여부 결정

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판단
-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

나. 부존재의 처리

-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 제2조 및 제3조를 근거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
-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명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다.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

라. 기간연장이 부득이한 사유(영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마.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5.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가. 공개 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나. 부분공개 결정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다. 비공개 결정

-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 기재
 -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하되,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라.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6. 공개 실시

가.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나.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다.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제2항)

라. 공개 일시 경과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제3항)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마.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법 제15조)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7. 즉시공개

가. 대상정보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장이 정하는 정보
-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나.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8.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위원장 :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

나.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법 제12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다.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라.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예시)》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마. 심의대상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를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9. 비용부담

가. 수수료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나. 수수료 금액

-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

다.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제2항, 조례 제8조제1항3호)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의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100%범위 내에서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마.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바.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10. 청구인 확인

가. 본인확인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시점부터 본인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나.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실시

다.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입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 제15조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11. 불복구제절차

가.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영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21조제2항)

※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나.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19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음(법 제20조 제2항)

IV.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가. 정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나.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실질비)

다. 비공개 유형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가)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내역(제12조)
-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것(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 회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국회법 제118조 제1항 단서상의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나)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다)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4조의4)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제1호 관련사례

- ①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및 예산내역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됨 ⇒ 비공개

위 해당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소재지·정원)와 제12조(예산)에 의하여 “법률”로 명백하게 비공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②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누설되어서는 안 됨 ⇒ 비공개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를 명문으로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비공개되어야 함

-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제1호에 의한 정당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 공개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칙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검찰보존사무규칙(1996. 5. 1. 법무부령 제425호로 개정된 것)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한 비공개는 제1호 소정의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음

※ 참고: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현재의 법규정은 구법과 달리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다시(괄호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되었음

- ④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의하여 III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쌀 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한 협상결과로 작성한 목록 등”)을 “실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467) ⇒ 공개

외국과 쌀관세화유예기간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된 사항을 수정이행계획서에 기재하였고, 그 문서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I급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국정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인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 그 정보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할 수 없음

※ 그러나 이 사례에서 판례는 해당 정보의 실질비성을 부인하였음에도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성격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정보공개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제1호에 의한 비공개 가능여부(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23098도 같은 취지) ⇒ 공개

대통령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⑥ 비밀로 분류되어 있던 정보를 사범연수생을 대상으로 이미 공개 상영한 바가 있는 경우 그 정보의 비밀로서의 가치 인정여부(서울고법 1997.11.20. 선고 97구13797) ⇒ 비공개

해당 정보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각각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비록 국가안전기획부가 사범연수생을 상대로 위 정보를 공개 상영한 바 있지만, 상영을 안전기획부의 청사 내에서 행하여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또 해당 정보가 북한의 대남공작 및 국내 좌익 활동실태에 관한 자료 등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⑦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창원지방법원 2003구합 1736) ⇒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법령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하여야 함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12.28]

◎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 2(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1999.3.26]

- ⑧ ·과세정보의 공개여부 (○○고등법원 2002누 19086/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4988) ⇒ 비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 외 ○○연맹이 청구의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임

- 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연구목적 공개여부(서울행정법원 2006. 9. 6. 선고 2005구합 20825) ⇒ 비공개

각 학교를 대상으로 비공개를 조건으로 하여 표집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차후 자료수집업무에 지장이 예상되고, 또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전수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자료로 무분별하게 인용되어 학부모 등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해당 정보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 ⑩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한 회의자료의 공개가능여부(서울행정법원 2006. 4. 25. 선고 2005구합28133) ⇒ 비공개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본문에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⑪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의 제1호에 의한 비공개여부(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비공개 사유 해당 안됨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여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훈령)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음

- ⑫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여부(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 해당되지 않음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 …,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6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비공개처분(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 잘못된 것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 ⑭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공개 여부(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9351) ⇒ 비공개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함

- ⑮ 조합에 부과된 과세정보의 공개여부(대법원 2006두18232) ⇒ 비공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3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제공을 요구 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항 단서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원고가 비록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증여세와는 세목을 달리하는 종합토지세가 조합 등에 부과된다는 점만으로 정보공개상 원고를 '타인'이 아닌 직접 당사자나 납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줄 수도 없음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가. 정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판결)

※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다. 비공개 유형

- 1)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2)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3)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4)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5)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6)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7)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8)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 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9)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10)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1)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12) 위험물의 저장위치
- 13)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14)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제 2 호 관련사례

-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대법원 2004.03.18 선고 2001두8254판결) ⇒ 비공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당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 ② 한일회담문서(외교관련문서) 중 일부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 공개

외국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온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외국에서 비공개 요청해온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오래 전의 정보로서(예, 30년) 비공개를 할 실익이 적고 또 양국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외교 관계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 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이, 예상되는 외교관계에서의 불이익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③ 외국 사법당국이 작성한 수사관련자료(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판결) ⇒ 비공개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관련자료와 우리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정보가 아직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의 인적사항, 공작활동 및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터폴 등 외국수사기관에서 일본 내 북한공작원과 관련한 자료에 관하여 무기한 비밀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는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에 대한 일본 사법당국의 수사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일 사법당국의 긴밀한 수사공조관계 및 상호신뢰관계가 심히 훼손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④ 2003년도 한·미 연례안보회의 회의록(국무총리행정심판 2005-01186) ⇒ 비공개

2003년도 한·미 연례안보회의 회의록 및 광주공항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에 수·발신된 문서 중 그 외 1건의 문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II급 비밀로 되어 있고, 광주공항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에 수·발신된 문서 중 “미 패트리엇 전력 조기 전개 협조 의뢰” 문서는 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임

⑤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의 제2호에 의한 비공개여부(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 비공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⑥ 법무부의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임시상륙허가 절차’의 지침의 공개여부(대법원 2007두 12927) ⇒ 공개

난민임시상륙허가절차와 관련된 정보인 난민임시상륙허가에 관한 규정은 영해 및 영토의 출입허가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공개된다 하여 테러범과 같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고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난민인정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악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방지하여야 하는 점, 난민인정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난민인정제도의 민주적 통제는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점,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도 볼 수 없음

⑦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 결과로 작성한 목록 등 공개여부(서울행정법원 2005 구합 20467) ⇒ 비공개

통상교섭에 관한 합의사항의 전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정보의 성격이 비추어 공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라고 해석됨.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가. 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 제4호, 제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다. 비공개 유형

1) 수사관계 조회사항

-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하지만 많은 경우에 동시에 제3호 해당사항도 있음

2)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3)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4)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요함)

5)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6)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3 호 관련사례

-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대법원 2004.03.18 선고 2001두8254판결) ⇒ 비공개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 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 ②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자료의 공개여부 ⇒ 비공개

입국심사관련 문제점 시정을 위한 업무지시공문, 입국심사제도개선 시행공문, 선박업무 및 해상 밀입국 방지관련 접수공문·업무지시공문 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 개최 계획서, 개최공문, 회의 자료, 회의록,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규제에 관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규제자 명단, 입국규제결정서 등에 관한 자료가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 비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호 해당사항이 됨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될 수 있음

- ③ 총기허가현황·위탁관리와 관련한 상세한 현황정보의 공개여부 ⇒ 비공개

총기허가 및 폐기에 관한 상세자료나 총기류에 관한 위탁관리관련 세부자료는 공개될 경우 범죄 단체 등에 의한 총기 등의 악용시도가 행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비공개하여야 함

- ④ 자신이 고소인인 강간범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 공개가능여부(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 공개

원고가 형사소송의 피고인인 소외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공개정보가 되지 않음

⑤ 국가보안유공자 관련정보 ⇒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청구서와,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보안유공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되어야 함

※ 국가보안유공자라 함은 국가보안법상 범죄자를 체포·처벌하는데 도움을 준 자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⑥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 공개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가. 정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하는 형사사건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다. 비공개 유형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나)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가)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나)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다)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라)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마)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제 4 호 관련사례

- ①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현황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판결) ⇒ 공개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 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②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있는 정보(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비공개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됨.

- ③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비공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

④ 정보원이나 정보수집기법과 관련된 정보(전주지법 2000. 2. 15. 99구147) ⇒ 비공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

⑤ “특별관리대상자의 수용·관리계획”(국무총리행정심판 2005-08300) ⇒ 비공개

“특별관리대상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 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⑥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 등(국무총리행정심판 2005-0189) ⇒ 비공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정보는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은 I급비밀·II급비밀 및 III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인 “대외비”로 정해져 있어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정보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해당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⑧ 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건수 및 조치내용 공개 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1588호) ⇒ 비공개

‘대구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건수 및 조치내용’에 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거수용 조치내용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조치내용의 주요부분을 통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본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 ⑨ 신분장부(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부산지법 행정부 2005구합 3029) ⇒ 비공개

원고의 신상관계 자료 일체(신분장부)는 교정기관의 고유 업무인 교정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수용자의 개별신상과 각종 처우 등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과 판단을 기록한 문서인 사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 속에는 원고의 재판 및 형 집행과정에 관여한 사법·교정 공무원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교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평가 및 그 방법 등 수용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위 문서는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

- ⑩ 청구인의 수용자건강기록부 내용 중 구치소 의무관이 외부전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내용과 그 자문에 응한 외부전문의의 이름의 공개 여부(인천지법 2006구합 3920) ⇒ 비공개

외부전문의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해당

- ⑪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공개여부(대전지법 2007 구합 4409 판결) ⇒ 공개

위 수사보고서에는 원고와 상피의자 ○○○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참고인 ○○○의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참고인 ○○○의 진술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⑫ 관급도서 사용내역서 공개 여부(대구지법 2005구합1987) ⇒ 공개

‘관급도서사용내역서’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관용도서대여부’와 … 거의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일응 인정되고, 위 관용도서대여부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임 (다만 수용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교정행정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그 사본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개대상 부분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⑬ 수용동태기록(문제수용자 생활기록부)(울산지법 2004구합2664) 공개 여부 ⇒ 비공개

수용동태기록(문제수용자 생활기록부)은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동태 및 처우상 유의사항, 접견 및 서신 등의 처리방법과 주의사항, 출정 및 이송시의 계호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될 경우 문제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문제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

⑭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 2001년 학교일지 성과급 공개 여부(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에 따라,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의 공개 요청건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01년 학교일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하여 이미 관련 행정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가. 정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다. 비공개 유형

1)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가)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범위·방법·시기·장소 등)

나)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다)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 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희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2) 시험관련 정보

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3)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정보

가) 인허가대상사전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는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공개), 제6호(인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의 공개) 해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명단
 - 중요한 행정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위원들이 압력을 받을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행정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개인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4) 입찰관련정보

가)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입찰예정자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다)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5)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관련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의 해당부분 참고)

6) 기술개발관련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7) 인사 관련정보

가)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보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나)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8)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포과정 정보

가)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나)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다)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라)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마)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바)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2946판결)

9)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가)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규조문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나)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 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다)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가능

10)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함

11)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체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함



제 5 호 관련사례

- ① 치과국가시험문제(문제은행방식) 공개여부(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 비공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②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의 공개여부(서울행정법원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공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는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 ③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선고 2001구15787판결) ⇒ 공개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연구교수선정 등 인사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④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 사항부분의 공개여부(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판결) ⇒ 비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회의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⑤ 시 산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명단, 발인자명단, 회의록(공개)의 공개여부 (춘천지법 2004구합1207) ⇒ 공개/비공개

- 시 산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은 그 명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민의 알 권리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공개로 인하여 심의위원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외부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들이 각종 사회단체의 이른바 로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함이 타당(공개)
- 위원회의 심의회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발인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비공개)
-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인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인 종료된 후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 회의내용 부분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공개)

⑥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공개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법조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포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본 판례는 3호, 7호, 8호 에서도 공개로 판단된 사항임

⑦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실적별 예산요구서의 공개여부(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 3273 판결) ⇒ 공개

예산편성 실적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포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⑧ 사법시험2차 답안지 공개여부(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 공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03. 8. 22. 선고2002두12946 판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협정문초안의 공개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 ⇒ 비공개

정부가 미국과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작성·교환한 이 사건 협정문초안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이고, 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이해관계집단의 대립·갈등으로 협상이 당초 전략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업무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⑪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공개 여부(대구지법 2006구합820)⇒ 비공개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개인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배점내역의 주요부분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가. 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나.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 비공개 유형

1) 비공개세부대상 정보

- 가)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나)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라)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마)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 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바)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2)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마)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3)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4) 공무원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가)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나)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다) 허위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의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 청취절차를 취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5)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가)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공개문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함.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다)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제 6 호 관련사례

- ①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판결)
⇒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② 이미 알려진 개인에 관한 정보(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판결) ⇒ 공개

이 사건 사고의 범인들인 ○○○와 △△△의 성명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사망한 남파간첩의 경우 원래 생활 근거지가 북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굳이 비공개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③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 청구한 자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판결)
⇒ 비공개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함

- ④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대전고등 법원 2003.6.26. 선고 2001누2162 판결) ⇒ 비공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시정 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함

- 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 ⇒ 비공개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 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⑥ 세무조사결과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 비공개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침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가 지침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 ⑦ 공소장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여부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공개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는 이유로, 공 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⑧ 징계 대상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2006구합27298) ⇒ 공개

징계대상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제외 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와 법관은 검사징계법 제23조 법관징계법 제26조에 의하여 징계시 징계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게 되어 있음

- ⑨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의 공개여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비공개

금품수령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⑩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전자료의 공개여부(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241 판결) ⇒ 공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 '제7조 제1항'은 법개정으로 현재 '제9조 제1항'를 의미

- ⑪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여부(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 비공개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200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고지거부자의 성명, 서명(날인)]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⑫ 진정사건 기록 중 ○○○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개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734) ⇒ 부분공개

사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 ⑬ 성과급순위명부 공개 여부(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비공개

모든 교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가. 정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다. 비공개 유형

1) 비공개사항

- 가)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 마)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바)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가)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공개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 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제 7 호 관련사례

- ① 기계식 주차장치가 적법한 기준과 재료로 제작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공단에서 실시한 기계식주차장치사용검사 관련서류 14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4502) ⇒ 비공개

이 사건 서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제작과 성능에 관한 구체적 자료로서 그 설치자의 기술적인 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영업상 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치의 제작·설치가 사실상 독점 또는 과점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경쟁이 제한된 업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될 경우 그 제작·설치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여야 함

- ② 과세정보에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경우 (○○고등법원 2002누 19086) ⇒ 비공개

문제의 과세정보에는 개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 그 시기 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사의 수입·지출상황,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 납세내역과 추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물론 제1호 해당사항도 있고 - 제7호에도 해당하여 비공개하여야 함

- ③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의 공개여부(서울행법 2006. 1. 5. 선고 2005구합16833판결) ⇒ 공개

요양기관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지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중 상위 또는 하위등급에 속하는 기관의 수와 주소·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함

- ④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의 공개가능여부(인천지법 1999. 11. 5. 선고 99구1536) ⇒ 공개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특정업소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비공개하여야 하는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하여야 함

- 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명단 및 내역의 공개가능여부(국무총리 행심위, 1998. 10. 9.) ⇒ 공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자금내역은 공개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바로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대상정보임

- ⑥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 등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11. 3. 선고 2005구합 12398) ⇒ 공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인해 공사 등에게 인정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해 보면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 ⑦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여부(서울고법 2002. 8.27. 선고 2001누17274) ⇒ 공개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⑧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대전지법 2006.7.26. 선고 2005구합2928) ⇒ 비공개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 ⑨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여부(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 공개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⑩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내역 중 외주처, 제작 내역 및 금액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 공개

기존의 제작금액이 공개될 경우 외주제작업체들 간의 가격담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제1TV의 경우 24% 이상, 제2TV의 경우 40% 이상을 외주제작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

- ⑪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공개여부(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 공개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재건축사업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⑫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공개 여부(수원지법 2005구합 5292) ⇒ 비공개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⑬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액(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공개 여부(수원지방법원 2005구합 9171) ⇒ 공개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큼.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됨이 정당함.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가. 정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다. 비공개 유형

- 1)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2)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3)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4)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제 8 호 관련사례

① 사업장의 상호명 및 주소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6132) ⇒ 공개

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총액, 신고된 각 사업장 종업원 수, 각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 각 사업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 수를 구분해서 표기 등이 건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거나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으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②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0233) ⇒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승인·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③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103898) ⇒ 공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건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됨.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함

9. 기타 비공개 사항

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공개거부(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의 취급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행하여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권리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임(법 제9조 제1항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과도한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청구인이 9.029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보공개에 공무원의 과도한 노력을 요구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고 공개될 실익은 없는 것이 됨(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판결)

참고 : 권리의 남용금지(는 모든 법 영역에서 타당한 법의 일반원칙임(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나.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법 제14조, 법 제9조 제1항)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전자를 공개하여야 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음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다. 정보자체의 존부에 관한 정보공개가 문제되는 경우(법 제9조 제1항)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공개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음. 정보 공개가 청구된 경우, 청구대상문서가 존재할 경우에,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결정을 하고,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결정을 함. 비공개결정의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여야 함

청구대상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를 이유로 제시하여 거부처분하게 됨.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개청구에 관련된 정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하여 비공개정보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답하는 것에 의한 비공개정보규정의 보호이익의 손상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모든 비공개정보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존부응답거부가 필요한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실제로 문서가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고 항상 존부 응답을 하여야 할 것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로 답하고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부응답거부를 한다면,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존부응답거부에 관련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청구자에게 추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임

정보의 존부에 관한 응답거부는 처분성을 갖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불복절차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9조)

주요 질의답변 사례

- I. 업무처리와 관련한 FAQ
- II. 공개·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FAQ
- III. 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FAQ

질 문 1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요?

- ▶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자의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당해 공공기관에게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한다는 것은 정보를 청구한 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행정서비스의 증대보다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 ▶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모일부터 모월모일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로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질 문 2

몇 박스가 될 정도로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 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 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자 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 참고로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악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목적, 규 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8.24. 2004두2783)라고 하고 있습니다.
- ▶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체"식의 과다 청구는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표 된 '정보목록'을 검색하여 구 체적인 청구항목을 청구서에 기재한 후 청구토록 안내하는 식의 비공개 결정 통지,
 -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을 적용(공개방법 직권변경)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방식에 행정행위의 부 관인 "조건" 부기,
 - ③ 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사본의 사전 복사 지 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

질 문 3

홈페이지에 사전공표대상 정보로 공개된 사항에 대해 사본 출력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했을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URL(접근경로 : 인터넷 주소명) 안내로 공개결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개’라 함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 및 교부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건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교도소 수감이라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위와 같은 정보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 건 정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건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7-01715)가 있습니다.

질 문 4

공개형태를 전자파일로 선택하여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청구했는데, 전자파일로 공개가 가능한지요?

- ▶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관보목록 및 관보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질 문 5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를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업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정보의 부존재는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거나 소관기관이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비공개 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정보의 부존재'를 비공개결정으로 통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즉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존재의 경우 비공개 결정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 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고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질 문 6

타 공공기관에서 우리기관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요?

-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 ▶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질 문 7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요?

- ▶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 문 8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공개)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자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청구취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형량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질 문 9

정보공개법시행령 상의 정보공개심의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 ▶ 정보공개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영 제11조 제2항의 규정 “심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밖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다만,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질 문 10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포함된 기간산정 중 토·일요일 포함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결정기간의 기산점으로 ①청구인 직접 방문 청구시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 ②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는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③인터넷 청구시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하고 있으며,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과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됩니다.
-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 5일 이하의 처리기간에는 산입되지 않고, 6일 이상 처리기간에는 산입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 부담경감을 위해 처리기간이 5일이하인 민원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 ▶ 기간산정 기준

초일산입·공휴일 불산입 -민원사무법 제6조(6일이상 민원)-	초일불산입·공휴일 산입 - 민법 제6장 -
①법 제11조 제1항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①법 제18조 제1항 비공개 결정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②법 제11조제2항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②법 제21조 제3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여 공개할 경우 공개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최소한 30일 이상의 간격을 둠
③법 제11조 제5항 20일내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 간주	③영 제12조 제1항, 제3항 공개결정일 부터 10일 이내 범위 내 공개 일시 정하여 통지, 통지 후 10일 경과 시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종결
④법 제18조 제2항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통지	④법 제21조 제1항 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질 문 11

이의신청통보시 "이의처리결정" 에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체인용 4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요?

- ▶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부인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는 결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결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①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고, ②기각은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③부분인용은 전부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 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④전체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질 문 12

도면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A3를 초과하는 도면에 대하여 복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1장당 2000원)에 맡길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수수료 제7조 관련)'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징구토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롬, 디스켓 뿐만이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 문 13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1/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범위에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요?

- ▶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제 대상은 ①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②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또는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④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입니다.
- ▶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가급적 외부전문가 위촉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질 문 14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를 수입인지가 아닌 우표로 받을 수 있는지요?

-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합니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시기와 관련,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우송공개인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 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 문 15

민원인이 민간위탁사업시설(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감사실적, 이유 결과 및 조치사항을 요청하였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이지요?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나열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업무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의 예시로서 이들 영역에서 비공개로 되는 것은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사형성과정 정보”와 관련 행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전과 달리 의사결정 후에도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도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 다만, 정보 공개로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염려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당해 공공기관의 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개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공개여부가 문제시되는 바, 종례의 판례(대판 2003.8.22, 2001두 12946)는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비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 ▶ 아울러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서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 마지막으로 정보를 공개(부분공개)하기 위해서는 법 제11조제3항, 영 제8조에 의거 제3자(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질 문 16

교직원의 징계관련 자료(성명, 직장명, 사유, 처분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 ▶ 판·검사(검사와 판사는 ‘검사징계법’ 제23조 및 ‘법관징계법’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를 제외한 그 밖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가능합니다.
- ▶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비록 그것이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등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이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 판결례(사건번호 06-27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질 문 17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공개가 가능한지요?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청취·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언자 부분을 가린 부분공개를 할지, 전체공개를 할지, 전체비공개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질 문 18

특정 직원의 임용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했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가 신청되었는데, 공개 가능한지요?

-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5호 “인사관리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제5호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 제5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판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질 문 19

시험응시 수험생이 본인의 OMR 답안지, 본인의 출제시험지, 출제정답을 정보 공개신청을 했는데 사본 출력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 ▶ 지방직 시험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규정의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 이와 반대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 아닌 ‘직접 출제방식’의 시험지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 참고로 판례는(서울행정법원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 문 20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건축신고 일체서류와 절차에 따른 협의서류 등을 공개 청구 했는데, 건축주의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를 해야 하는지요?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공개시 당해 민원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②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 문 21

인허가 서류(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관련 서류 : 법인번호, 사업지등록증, 주소, 폐기물종류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요?

- ▶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비교·형량에 참고해야 합니다.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소재지, 업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인·단체·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노하우, 고유 기술, 내부 업무처리 등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질 문 22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해당 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서조항 각목 중 ‘다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단서조항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 다만,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 문 23

지방의원이 의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통·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요?

- ▶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사·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임.
- ▶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 문 24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 현황과 지급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 ▶ "시간외 수당, 출장비 지급현황"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의 예외적 공개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문서를 직접 생산한 공무원이라든지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점,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현황은 개별 공무원의 소득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부당사용에 대한 공익적 감시활동이라는 공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질 문 25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에 대한 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공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의 예외적 공개사항 중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퇴직공무원도 포함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또한 당해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 문 26

A씨가 자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문 및 납부영수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공개청구를 행할 경우 공개여부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법제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된 전산정보 및 이에 출력된 종이문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요청한 "공문 및 납부영수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즉 컴퓨터에 의해 입력·저장·편집·검색된 정보를 출력한 종이문서인지 검토하신 후 이에 해당되면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없이 민원인의 서면 또는 구두의 신청에 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본을 교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종이문서로 생산된 정보라면 이는 본인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 청구로 처리해야 됩니다.

질 문 27

예금의 평잔액, 평균이율, 금고업무취급약정서 내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제7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판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비공개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또한 당해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 문 28

사단법인 위원회가 취득한 검인계약서에 대해 매매일자와 매매금액에 대한 정보 공개가 청구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지요?

- ▶ “OO년 당시 (사)위원회가 취득한 계약서상 매매일자와 매매금액”의 정보는 ‘법인의 내부정보’에 해당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되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정보사용 목적)를 근거로 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참고로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2002.8.27. 선고 2001누 17274호 판결 참조)를 참조하여 보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 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제7호의 비공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①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②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③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③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질 문 29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심의, 완공내역(정산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 당해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 등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부분공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참고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 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 ▶ 다만,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체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시되,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제3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및 불복제기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질 문 30

업체선정 및 계약까지 완료되어 곧 착수예정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청구시 공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제7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판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여부는 당해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제7호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또한 당해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문 및 통지문 예시

I. 업무처리 관련

1. 청구내용 보완 요청서
2. 제3자 의견 요청서
3. 기관이송 안내문
4. 민원이첩 안내문
5. 종결처리 안내문(공개기간 도과 · 반복청구)
6.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II.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관련

1. 공개 결정통지서(일반 · 정보소제 안내 · 타 자료로 같음)
2.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III.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1.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 각호 해당)
2. 비공개 결정통지서(정보의 부존재)
3. 비공개 결정통지서(불명확한 청구내용)

IV. 불복구제절차 관련

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각하 · 기각)
2.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 불명확한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

청구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내용 보완을 위해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 : 정보공개 청구내용 보완 요청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권(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정보내용)는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청구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다시 한번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명)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청구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직접 방문시 : (해당기관의 정보공개접수처 장소 안내)
 - ※ 인터넷 이용시 : (해당기관의 정보공개목록 제공 웹사이트 안내)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 제3자(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 청취를 할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 :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본 기관으로 불임과 같이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불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불 임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3. 정보공개청구의 소관기관 이송

공개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사실을 알려주는 공문입니다.

제 목 : 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소관기관명)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날짜)일자로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해당기관명) 정보공개 담당자 성명 :

이메일계정 주소 :

행정전화번호 :

4. 민원 이첩처리

정보공개 청구건이 일반민원으로 분류됐을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 : 정보공개청구 민원이첩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는 동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청구는 (청구내용 요약)으로서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이를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5-1 공개기간 도과로 인한 종결처리

공개된 정보에 대해 법정 공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응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 :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본 기관은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 결정 및 공개일시 등을 귀하께 통지하였으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5-2 반복민원에 의한 종결처리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이 3차례 이상 청구되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 :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청구는 기존 정보공개 처리건(접수번호, 접수일자/2개 이상)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6 공개여부결정기간 연장 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정 보 내 용	OOOOOO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OO.OO.OO / OOOOOO	당초결정기한	OO.OO.OO
연 장 사 유	<p>1. 내용 : (대상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p> <p>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p> <p>③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p>		
연 장 결 정 기 한	OO.OO.OO		

II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관련

1-1 공개결정 통지(일반)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p>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p> <p>[공개 문서명]</p>		

1-2 공개결정 통지(정보소제 안내)

공개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제안내로 갈음하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p>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p> <p>[공개 문서명]</p> <p>다만,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사전공개·공표된 자료로서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URL : 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출력 가능하므로 정보소제 안내로 대신합니다.</p> <p>- 정보소제 : (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 기재)</p>		

1-3 공개결정 통지(타 자료로 갈음)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p>[공개 문서명]</p> <p>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 자료를 공개합니다.</p>		

2. 부분공개 결정통지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해당 각호 기재)</p> <p>2.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비공개정보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 전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1-1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p> <p>② 「형사소송법」 제47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p> <p>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p> <p>④ 「국회법」 제118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등</p> <p>(으)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000의 증여세 과세 관련 00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

1-2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② 대북한 관련 자료 ③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관련 자료 ④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⑤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⑥ 위험물의 저장위치 ⑦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보안감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p> <p>공개될 경우, 대남공작활동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 북한정보기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

1-3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및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수사관계 조회사항</p> <p>②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p> <p>③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p> <p>④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p> <p>⑤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변조 ,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총기허가현황·위탁관리 현황정보</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로서 총기 구경별·종류별·목적별 허가 및 폐기현황 및 위탁처, 위탁되고 있는 총기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범죄단체 등에 의한 총기 등의 악용시도 등으로 국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

1-4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p> <p>3. 사유 : ※ <u>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u></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p> <p>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p> <p>③ 무기·화약·마약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p> <p>④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p> <p>⑤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수용동태기록부(문제수용자)</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신분기록 및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로서 처우상 유의사항, 집견 및 서신 등의 처리방법과 주의사항, 출정 및 이송시의 계호방법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문제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문제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의 현저한 곤란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

1-5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p> <p>4.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p> <p>② 국가고시·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및 출제위원 명단</p> <p>③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p> <p>④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p> <p>⑤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p> <p>⑥ 임면·복무·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p> <p>⑦ 보조금·용자 관련 정보 중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OO부처의 승진심사과정이 담긴 심사회의를록</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토론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p> <p>또한 발언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보복조치 등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

1-6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문입니다.

▶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p> <p>② 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p> <p>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상황</p> <p>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정보</p> <p>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p> <p>⑥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p> <p>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 등 개인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특정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1-7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p> <p>②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p> <p>③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p> <p>④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p> <p>⑤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 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로서 입찰참가자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심사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여 해당 업체(또는 개인)의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손상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1-8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용지매수계약서</p> <p>② 설계단가표</p> <p>③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p> <p>④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p> <p>⑤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정보</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당해 건축물의 계약내용(예약명, 하자담보기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2. 비공개 결정통지서(정보의 부존재)

공개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청 구 정 보 내 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항</p> <p>② (법령명)에서 명시한 보존기간(작성 : 날짜, 보존기간 : 〇년)이 경과하여 현재 폐기된 사항</p> <p>③ (날짜) 경에 발간 예정인 사항 등</p> <p>(으)로서 우리부(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3. 비공개 결정통지서(불명확한 청구내용)

청구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공개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p> <p>2.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우리부(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p> <p>② 청구기간 또는 청구범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p> <p>(으)로서 귀하께 (보완요청날짜)에 ‘청구내용 보완’을 요청했으나, 회신 없이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에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

IV

불복구제절차 관련

1-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각하)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이의신청(각하)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이 의 신 청 내 용	0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p> <p>2.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귀하의 이의신청은</p> <p>① 공개결정에 대한 사항</p> <p>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1-2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기각)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00.00.00	접 수 번 호	000000
이 의 신 청 내 용	000000(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p> <p>2. 사유 :</p> <p>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구체적 기각 사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이 의 신 청 내 용	OOOOOO(청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00.00.00 / 000000	당초결정기한	00.00.00
연 장 사 유	<p>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p> <p>2.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귀하의 이의신청은</p> <p>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p> <p>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 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p> <p>③ 이의신청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p> <p>(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p>		
연 장 결 정 기 한	00.00.00		